

1.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됨에 따라 착수금·중도금 지급 기준·방법, 중요탐재장비의 선정, 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경광등 설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도입계약 관련 착수금·중도금 지급 기준(시행규칙안 제3조)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방법을 정함.

나. 해양경찰장비 중 중요탐재장비 도입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해양경찰장비의 성능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탐재장비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호환성, 운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다. 해양경찰장비 현황 및 관리 등 기록·관리방법(시행규칙안 제5조)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 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라. 경광등 설치기준(시행규칙안 제9조)

해양경찰장비에 설치하는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2. 교육과정의 편성 계획서
3.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기준·방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계속계약 중 1차 계약의 경우, 해당 차수 계약금 전액을 착수금으로 지급한다.
2. 장기계속계약 중 2차 계약 및 그 이후의 계약의 경우, 해당 차수 계약금 전액을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년차 사업 및 장기계속계약의 최종 차수계약에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보증기간이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설정된 청구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2. 별지 제4호서식의 해당 사업 집행에 관한 이행확약서

3. 그 밖에 계약이행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의 대상이 된 해양경찰장비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가 착수금 및 중도금의 비율을 초과할 때까지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가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함정·항공기 도입 시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심의를 받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에 관한 결정 이전에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건조·제작 과정에서 중요탑재장비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요탐재장비는 호환성·운용성 등을 감안하여 단수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간 성능 및 건조선가, 설계상 변화가 크지 않은 때에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요탐재장비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리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③ 그 밖에 해양경찰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용도폐지된 함정의 정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용도 폐지된 함정에 대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으로 선정된 용도폐지 예정인 함정이 양여 일정에 맞추어 정비가 곤란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사전 정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의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감독관의 배치 기준·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감독관은 연속으로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감독관으로 배치할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의 사용 승인 신청 등) 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시를 사용하려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항공기 등록증
3. 해양경찰장비 도장·표시사용 협약서

③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경광등 설치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함정건조 감독관 배치기준(제7조 관련)

구분	경비함정		특수정		그 밖의 함정
	대형 (1000톤 이상)	중·소형 (1000톤 미만)	대형 (500 톤 이상)	중·소형 (500톤 미만)	바지, 고속단정, 구조장비(보트류) 등
인원(척당)	2명	1명	2명	1명	인근 감독관 겸임근무 (건조척수에 따라 필요시 1명 배치)

- * 해양경찰청장은 조선소 위치 및 건조척수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감독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 해양경찰청장은 건조사별로 정감독관과 정감독관을 보좌하는 부감독관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

함정용 경광등 설치 기준(제9조 관련)

1. 함정용 경광등 외형

색상 배열	형상
적색 또는 청색	

2. 크기 · 광원방식 : 톤급별 적정 길이 통일 및 눈에 쉽게 띄는 고휘도(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매우 큼) LED 적용

톤급별	1000톤이상	200톤이상	100톤이하	단정 등 보트류
크기(m)	약 1.7	약 1.4	약 1.1	약 0.8
성 능	방수등급 : IP56 / 렌즈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 앰프 출력 : 50w 이상			

3. 설치위치 : 외부에서 잘 보이는 마스트(mast: 배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상부 정면

제 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지정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주소
지정내역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지정조건(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관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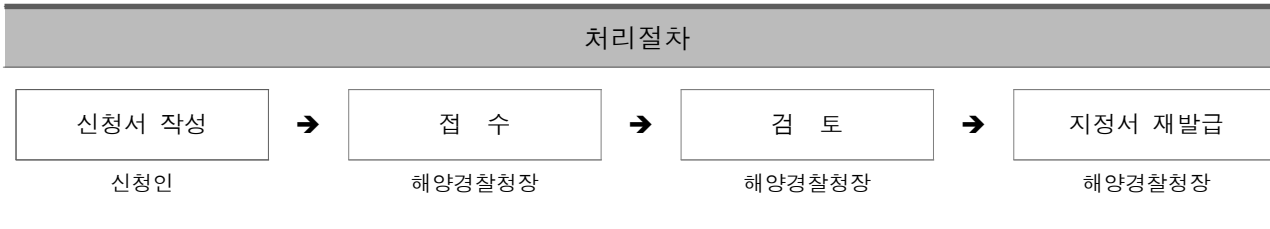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기관·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청사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가 헤어 못 쓰게 된 경우: 지정서 원본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이 행 확 약 서

1. 수신자 : 해양경찰청 재무관 귀하

2. 계약현황

금액단위 : 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건명	계약금	(☐ 착수금 ☐ 중도금) 신청액

3. 확약내용

- 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약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방법 등)에 따라 상기 (☐ 착수금 및 ☐ 중도금)을 신청하며,
- 나. 반환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 착수금 ☐ 중도금) 잔액과 약정이자 상당액을 해양경찰청에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
- 다. 위 계약의 (☐ 착수금 ☐ 중도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자금은 해당 계약의 인건비 및 자재확보 등의 계약이행을 위한용도 외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해당 금액 반환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

[] 해양경찰장비 도장
[] 해양경찰장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단체명	기관·단체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장비 용도				
장비 종류	[] 선박 [] 항공기			
	명칭		종류	
	탑승인원		선적지·등록지	
	톤수		마력·출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를 지원하는 선박/항공기로서 해양경찰장비의 도장·표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항공기 등록증 3. 해양경찰장비 도장·표시사용 협약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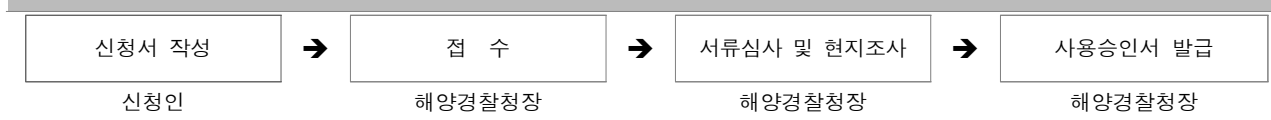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해양경찰장비 도장·표시 사용승인서

승인대상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승인내역	사용 도장·표시	
	사용 장비	
	사용조건(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장비에 대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표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연 락 처	(032) 835 - 2771